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홍근 (기획예산처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정배분사업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및 복권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(안 제17조),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(안 제18조), 복권기금의 사용신청(안 제19조), 복권위원회 위원 규정(안 제11조)을 정비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7~19조)

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배분, 용도,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
나. 복권위원회의 구성(안 제11조)

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,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기관 합의 중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”을 “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”으로, “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”을 “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획예산처

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23조제3항제5호”를 “법 제23조제3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6조제1항”을 “법 제26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동법 제17조, 제18조,

제19조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복권위원회의 위원) 법 제 14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<u>고위 공무원</u>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<u>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</u> 각 1명을 말한다.	제11조(복권위원회의 위원) ---- ----- ----- <u>차관</u> <u>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</u> ”-- ----- <u>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.
<신 설> 1. ~ 9. (생 략)	1. <u>기획예산처</u> 2. ~ 10. (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
제17조(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)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7조(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) <삭 제>
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: 100분의 12.583	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: 100분의 10.371	

3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7조
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: 10
0분의 5.310
4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
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
기업창업 및 진흥기금: 100분
의 6.356
5. 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 제3
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:
100분의 14.286
6. 지방자치단체: 100분의 17.26
7
7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
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
별법」 제160조에 따른 제주
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:
100분의 17.267
8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에
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: 10
0분의 4.286
9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
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
금: 100분의 5.846
10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

료공단: 100분의 6.428

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기금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등”이라 한다)의 자체수입, 여유자금,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

2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

3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·조정 결과

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,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
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
제1호에 따른 재해 및 「재난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
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
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
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⑥ 복권위원회는 「국가재정
법」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
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
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
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
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.
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
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
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
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
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
할 수 있다.

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
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
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
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
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

⑤ 법 제23조제3항제6호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.

----- 법 제23조의2제1항-----

-----.

<삭 제>

<u>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.</u> <u>제18조(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)</u> <u>법 제24조제1항에서 “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복권수익금의 용도, 사업내용,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</u> <u>2.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</u> <u>3.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<u>제19조(복권기금의 사용신청) 법 제26조제1항에서 “복권기금의 용도,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~ 4. (생략)</u>	<u>제19조(복권기금의 사용신청) 법 제26조의2제1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. <u>1. ~ 4. (현행과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14 - 3412